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20호 2002. 5. 17)

총 무 위 원 회 2002. 5. 27(월)

1. 심사경과

가. 2002. 5. 17 사천시장 제출

나. 2002. 5. 17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2. 5. 23 사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가. 제안이유

-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인수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 조례 개정.
-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수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인원을 150분의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대폭 완화 조정.(안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1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